

대학원의생명과학과위원회 운영규칙

제정 2015. 5. 6

1차개정 2017. 11. 27

2차개정 2019. 4. 22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의과대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아주대학교 대학원의생명과학과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과과정의 편성 및 변경
2. 대학원 단기과정 및 연수교육 과정
3. 입학시험 사정
4. 종합시험 사정
5. 학생의 지도 및 논문심사
6. 장학생 선발
7. 기타 의과대학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

제 3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9.4.22>

제 4 조(위촉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의생명과학과장이 된다.(개정2017.11.27.)

- ② 위원은 의료원의 대학원 의생명과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과 의과대학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의료원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 5 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.

제 6 조(회의의 소집 및 심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 조(회의록 및 보고)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며 중요한 사항은 의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.

-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 <신설 2019.4.22>

제 8 조(보 칙)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